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68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68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53022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김동연, 송재성

피고, 항소인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손태홍

변론종결 2022. 10. 21.

판결선고 2023. 2.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530226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4. 21. 접수 제913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A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11. 1.부터 원고 A가 사망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은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r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 ‘나머지 원고들’ 다음에 ‘(이하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r 제1심 판결 제3면 제17행 및 제6면 제18행의 ‘2019. 7. 19.’을 ‘2020. 7.경’으로 각 바꾼다.

r 제1심 판결 제3면 제19행의 ‘피고 E’를 ‘원고 E’로 바꾼다.

r 제1심 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꾼다.

『 다만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망인과 원고 A 사이에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모두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단순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제외하고는 위 원리금을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자 망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위 대출금보다 훨씬 높았고, 망인 등이 변제하여야 할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가 그리 크지 않아 나머지 원고들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단지 피고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순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평생 자신들의 집을 소유하기를 염원했던¹⁾ 망인과 원고 A가 자신들이 거주하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증여하였음에도 다른 자녀 5명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서 단순 증여라기보다는 부담부증여였을 가능성이 큰 점, 원고 A의 2020. 9. 6.자 정산 통보에 대하여, 피고도 “내가 부양을 안 했다고 하는데 엄마(원고 A)의 부양기준은 뭘까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미지급금 차액이 있으니 엄마에게 소정의 생활비는 지급할 것이고, 사후에도 남은 돈이 있으면 엄마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답변한 사실(갑제1호증) 역시 부모에 대한 부양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여생 동안 원고 A 등 부모를 부양할 것을

조건, 즉 부담으로 한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의 ‘❶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 제1심 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1행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를 아래와 같이 바꾼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r 제1심 판결 제7면 제2행의 ‘상속인이’를 ‘상속인인’으로 바꾼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주위적 청구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양은상, 판사 김양훈, 판사 윤웅기

별지

1) 갑 제1호증 참조